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9.

발 의 자 : 문대림 · 박지원 · 정태호
윤준병 · 김 윤 · 김한규
부승찬 · 서삼석 · 김기표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은 제주4·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·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와 함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바, 해당 특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상 특례 근거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·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별표에 반영함으로

써 제주4·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·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0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의2제3항	사용료 등의 감면	2031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